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4. 12. 15.

제안자 : 정상혁의원 외

□ 수정 이유

- 충청북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기존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성있는 도민을 위촉토록 함으로써 도민감사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 구성인원을 기존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여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1항)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 감사에 관한 전문성있는 도민을 위촉토록하여 도민감사관의 질적향상을 도모(안 제3조제2항제3호)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안 제4조)
 -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 제4조(임기 등)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20인”을 “15인”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4조의 제목을 “(임기 및 신분보장)”에서 “(임기 등)”으로 한다.